

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결정통지서

발급번호		발급일				
납부자	성 명(명칭)				생 년 월 일 (법인등록번호)	
	주 소 (소 재 지)	(전화번호 :)				
당초 부과결정 고지번호						
환 급 내 역	구 분	당초부과년도	당초부과결정액	기 납부액	변경부과결정액	환급액
	금 액		원	원	원	원
	환급사유					
환 급 대 상	산지의 표시	소 재 지				
		환급면적(㎡)				
환급가산금 산출내역						
환급금 및 환급 가산금 결정액		계	환급금	환급가산금	결정일	
		원	원	원		

「산지관리법」 제19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,
지방산림청장,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, 국립수목원장,
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, 국립산림과학원장,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

직인

유의사항

- 통지서를 받은 납부자는 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지급청구서를 관할청에 제출해야 합니다.
-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결정통지일부터 5년 이내에 납부자가 관할청에 환급을 청구하지 않으면 「국가재정법」 제96조 및 「지방재정법」 제82조에 따라 청구 권리가 소멸됩니다.